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9조 (서비스 계약 체결)

- ① 서비스 의뢰나 신청 시 센터와 “장기요양서비스제공(이용)계약서”에 준하여 계약(기간 명시)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, 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 단,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② 계약 당사자는 서비스제공 기관장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(신원인수인) 등의 대리인으로 한다.
- ③ (계약상의 내용)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내용, 계약기간, 서비스 비용, 지급방법, 손해배상책임,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포함한다.
- ④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계약서를 작성(개인정보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)
- ⑤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(이용)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한다.

제10조 (이용계약내용)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**계약기간** :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 - ② **계약목적** :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 -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 -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,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.
 - ⑤ **계약의 만료/계약의 해제**
 -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(보호자[신원인수인]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(보호자[신원인수인]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하며,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.
 -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 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당연 소멸되며, 양당사자의 협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.
 -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·폭행을 한 경우
 -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
 -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·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
 - 계약에 의한 서비스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위 사항에 의하여 센터에서 계약을 해지 한 경우 센터는 그 사실을 계약해지일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**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 및 의무**
 - 신원인수인의 권리(보호자 또는 보증인)
 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
 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 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수급자가 쾌적하게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 - 신원인수인의 의무(보호자 또는 보증인)
 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⑧ 수급자의 권리

-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고 또한,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-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.
-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제11조 (이용비용 및 수납)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월이용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원	150분 이상	48,250원
60분 이상	24,120원	180분 이상	54,320원
90분 이상	32,510원	210분 이상	60,530원
120분 이상	41,380원	240분 이상	66,770원

○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84,670원	76,340원	47,670원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4년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-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3조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 20% 범위 내에서 추가산정. 단,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산정하지 아니한다.

②본인부담금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월 이용한도	본인부담금	15%	보험공단 85%, 일반이용자 15%
		6%, 9%	의료급여수급자, 감경대상자
		0%	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③그 밖의 이용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제12조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절차

- ① 신청접수 : 전화 또는 내방 접수
-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: 급여계약예정 대상자에게 관리자 사전방문을 통한 종합적인 상황 및 욕구파악. 욕구사정은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함.
- ③ 서비스 계약 체결
- ④ 서비스 제공계획 및 통보 :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토대로 계획 작성 및 수립 후 통보함.
- ⑤ 요양보호사와 보호자(신원인수인) 및 수급자 사전 면담 및 인수인계
- ⑥ 서비스 제공